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이하 '본 정관'이라 칭한다.) 제95조에 의거, 이사회를 원만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이 세칙을 정한다.

제2조(총장의 선임) 본 정관 제41조 1항에 의한 총장의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조(전임교원의 임용, 승진 및 절차) 전임교원의 임용 및 승진은 본 정관 제 41조 2항에 의하되, 신규임용시는 총장의 복수제청으로 하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단, 지원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단수일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시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법과 사립학교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일반계열의 경우 학문성이 인정되는 해당 정규박사학위취득자 및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2) 예능계의 경우 박사와 석사 및 그에 준하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소한 4년 이상 수학한 자(학부전공은 2년으로 인정한다.). 단, 실용음악전공의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도 인정한다.

2) 신학전공의 전임교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정년트랙은 단독 목회 2년 이상) 소속한 지교회 담임목사 및 총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신학전공 이외의 전임교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거나 본 교단신학의 기본 입장에 동조하는 세례교인으로 본 교단의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 임용 후 본 교단으로 전입 가능한 자.

4) 본 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 그리고 공동체 생활현장에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열의가 있는 자.

5) 복음주의적 기독교대학의 교수로서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

2. 전임교원의 승진은 전임교원 임용의 절차를 취하되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교육 또는 연구 연수를 필요로 한다. 단, 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은 동 연수계산에서 제외한다.

1) <삭제>(2012.08.31.)

2)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 6년

3)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 5년

3. 그 외의 교원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삭제)

제5조(명예총장) 다년간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에 봉직하여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 결의로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교수) 다년간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한 자로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으며 대우 및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거한다.

제7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및 직원의 임용, 승진에 관한 사항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